◉문화재청공고제2020-249호

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

「국유재산법 제72조~제73조」에 따라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및 연체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독촉을「국세징수법 제23조」및「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8월 6일

문화재청장

1. 제목: 2018~2019년도분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

2. 공고 내용

가. 2018년도분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내역

대상자	점유지	점유기간	점유면적	변상금액	연체료	비고
장문현	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64-509	2018.1.1.~12.31 (1년)	36㎡	269,560원	16,910원	연체료(229일) : 2019.11.1.~2020.6.16
장문현	서울 성북구 석관동 409	2018.1.1.~12.31 (1년)	497㎡	11,331,600원	710,940원	연체료(229일) : 2019.11.1.~2020.6.16

나. 2019년도분 변상금 부과내역

대상자	점유지	점유기간	점유면적	변상금액	연체료	비고
장문현	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64-509	2019.1.1.~12.31 (1년)	36㎡	269,560원	-	
장문현	서울 성북구 석관동 409	2019.1.1.~12.31 (1년)	497㎡	12,166,560원	-	

3. 법적근거

가. 변상금: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

나. 연체료: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

4. 공고기간: 2020.8.6.~8.20.(15일)

5. 공고내용

가. 위 변상금 및 연체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(02-948-0140)로 연락하여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또한, 납부기한 내에 변상금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「국유재산법 제73조」,「국세징수법 제23조」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 부과 및 강제징수 되오니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다. 아울러,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만료되면「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」에 따라 본 내용은 본인에게 도달 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.

6. 문의처: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

(주소: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81, 전화: 02-948-0140, 팩스: 02-972-6301)